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향후 전망 분석

오 윤 석*

목 차

- I. 서론
- II. 생물다양성협약과 접근 및 이익공유 협상
 - 1. 생물다양성협약 개관
 - 2. 접근 및 이익공유 협상
- III.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 1. 나고야의정서의 구성
 - 2.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 IV. 향후 전망 및 제언

* 법학박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초록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이다. 이익공유목적은 다른 목적들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자원보유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기 위한 주권을 승인하고 있고,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그들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의 제공국과 공유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사전통지동의와 상호합의된 조건, 이해당사자의 참여, 이익공유제도 및 전통지식의 보존에 대한 지침과 기타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작업반을 설립하였다. 동 작업반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초안을 마련하였다.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2010년 10월 18~29일까지 일본의 나고야에서 개최되었다. 동 당사국총회는 일련의 전략적, 실체적, 행정적 및 예산에 관한 이슈들을 고려하고 47개의 결정을 채택하였다. 특히 동 당사국총회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실체적인 규정으로 의정서의 목적, 접근조건, 이익공유, 유전자원의 이용,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와 전통지식, 의정서의 이행, 감시 및 초국경적 상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채택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생물다양성, 유전자원, 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공유, 사전통지동의, 상호합의된 조건

I. 서론

인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생물자원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고, 생물자원은 그 변이의 종류 즉, 유전자형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인류는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로 오랜 기간동안 보다 자원적 가치가 높은 각종 유전자원¹⁾을 탐색·추구·개발하여 왔으며, 또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²⁾을 이용하여 식량, 의약품, 환경 및 문화적 생활을 영위해 왔다. 또한 인류는 육종기술을 포함한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보다 고도의 유전변이를 인위적으로 창출하여 이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생물자원의 확보와 보존은 인류의 다양한 필요와 생존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유전자원의 확보와 보존필요성은 첫째, 유전자원의 공급원인 야생종(landraces)의 소멸문제³⁾, 둘째, 단작(monoculture)과 같은 한정된 품종에 의존한 재래종의 소멸 등 작물의 획일화문제, 셋째, 인구증가에 따르는 식량문제⁴⁾,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 문제⁵⁾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

1)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의 유전적 기능단위를 포함하는 유전물질 중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para. 10-11. 따라서 유전자원은 유전물질 중에서 실용성과 관련되는 용어로서 인간에게 유용한 자원을 말하는 것이다. Lyle Glowka, *A Guid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orld Conservation Union, 1994. 국립환경연구원 역,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해설서, 국립환경연구원, 1995, 47-48면.

2)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 예술 및 문화 등에 관한 결과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전통의학, 전통치료행위, 식품, 농업, 환경 등에 관한 지식과 전통문학, 음악, 미술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된다.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통의학 관련 전통지식 현황조사 및 지재산 관련 연구, 특허청, 2002, 1면.

3) 현재 자연계에 생존하는 생물종의 수는 약 1,392,485종(Edward Wilson, *The Diversity of Life*, 2nd ed., W. W. Norton & Company, 1999) 또는 3,000만종 이상(Jeffrey McNeely et al., *Conserving the World's Biological Diversity*, World Resources Institute, Conservation International, World Wildlife Fund-US, World Bank, 1990)으로 추산되고, IUCN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내에 50만 내지 100만종 이상의 생물종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철호, 식물유전자원확개론, 도서출판 진술, 2000, 288면 이하 참조.

4) 2010년 현재 세계의 인구는 약 65억 명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10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의 인구가 만성적인 영양부족의 상태에 있고 매년 1,8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개도국의 영양부족 인구통계 (<http://www.hunger.or.kr/gia/hot/ungernourishment1.xls>).

5) 1996년 기준 세계제약시장의 규모는 약 2,100억 달러로 집계되었고, 세계인구의 약 80%가 1차적으로 그들의 건강을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Daniel M. Putterman, "Model Material Transfer Agreements

결하기 위해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농업용 식물과 의약의 개발 등 전략수립에 부심하고 있다.⁶⁾

유전자원에 대한 가치인식과 함께 개도국들은 자기들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공유를 주장하게 되었다. 즉 선진국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기존의 특허제도에 대한 불합리함과 불평등성⁷⁾을 주장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새로운 보호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는 오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보유국과 이용국 및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체제의 설립을 위해 국제사회는 끊임없는 노력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2010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의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⁸⁾는 “생물다양성협약

for Equitable Biodiversity Protecting”, *Colorad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vol.7(1996), p.149.

- 6) 현재 우리나라의 생물자원보유(식물과 미생물) 현황을 보면 식물 183,000점과 미생물 68,000점으로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식물 512,000점과 미생물 209,000점, 중국은 식물 390,000점과 미생물 72,000점, 인도는 식물 340,000점과 미생물 12,000점, 러시아는 식물 320,000점과 미생물 41,000점, 일본은 식물 243,000점과 미생물 113,000점을 보유하고 있다. 매일경제, 「한국은 생명자원 6대 보유국 ... 원천기술 확보가 관건: 토마토 종자 19 가격은 금값의 3배 부가가치 높고, 미생물 520만종 중 배양 12만종 뿐 미개척지 많아」, (<http://www.mk.co.kr/>), 2010년 7월 18일 인터넷 검색.
- 7) 유전자원관련 분쟁사례를 보면, 인도의 님 트리(Neem Tree) 사건, 바스마티 라이스(Basmati Rice) 사건, 아마존의 아야후아스카(Ayahuasca) 사건, 카바(Kava, 폴리네시아산 관목) 사건, 바바스코(Barbasco) 사건, 엔도드(Endod) 사건과 투머릭(Turmeric, 인도산 심황)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님 트리(Neem Tree)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ily Marden, “The Neem Tree Patent: International Conflict over the Commodification of Life”,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1999), pp.284-287 참조; 두 번째로, 투머릭(Turmeric, 인도산 심황)특허사건에 대해서는 Carlos M. Correa,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AO Background Study Paper*, No.8(1999),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pp.4-5 참조; 세 번째로, 아야후아스카 특허사건(Ayahuasca Patent Case)에 대해서는 Catherine Monagle, Aimee T. Gonzales, *Biodivers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view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light of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 Joint Discussion Paper, 2001, p.6 참조.
- 8)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COP)는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약의 모든 체약국들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1994년 11월 28일-12월 9일까지 바하마(Bahamas)의 나소(Nassau)에서의 제1차

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라 함)를 채택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Sharing: ABS)의 협상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채택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생물다양성협약과 접근 및 이익공유 협상

1. 생물다양성협약 개관

생물다양성협약⁹⁾은 생물다양성¹⁰⁾의 보존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택되었다.¹¹⁾ 협약은 전문, 본문 42개 조와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아홉 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제10차 회의는 2010년 10월 18일-29일까지 일본(Japan)의 나고야(Nagoya)에서 개최되었다. 자세한 사항은(<http://www.cbd.int/convention/cops.shtml>) 참조.

9)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1992년 5월 22일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에서 채택되고, 동년 6월 5일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에서 150여 개국이 서명하여 1993년 12월 29일 발효하였다. 2011년 4월 20일 현재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은 193개국이고,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동 협약의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1995년 1월 1일 동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http://www.biodiv.org/world/parties.asp>). 한편 미국은 1992년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지적재산권조항과 이익공유조항들을 언급하면서 동 협약의 서명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생물다양성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생물다양성협약이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에서 지적재산권의 긍정적인 역할을 승인하지 않고, 기업의 사적 거래에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등을 사용한 정부의 관여가 너무 심해질 수 있다는 미국 산업계의 저항을 반영한 결과이다. Sean D. Murphy, "Biotechnology and International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42(2001), pp.71-72.

10)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이란 "육지, 해양 및 기타 수중생태계와 그들의 부분을 구성하는 생태학적 복합체를 포함한 모든 자원으로부터 유기체들간의 변이성(variability)을 말하는데, 이것은 종 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협약 제2조.

11) 제1조 의제 21(Agenda 21) 제15.4는 각국 정부는 생물자원 원산국과 그 국민이 생명공학 개발과 유전 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재근, "자생식물유전자원의 국내적 보호와 국제법", 국제법학회논총, 46권 3호(2001), 대한국제법학회, 210-211면.

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국제규범이다. 협약의 기본 체제는 보존과 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협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생물자원의 개발에 대한 국가주권의 승인, 환경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책임, 개별 국가들이 보존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와 국제적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들(국가들이 취해야 할 조치로서 연구, 훈련, 교육, 홍보, 환경영향평가,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와 국제적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방법들(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접근, 생명공학기술 등 발전된 기술의 선진국에 의한 개도국에 대한 이전, 정보교환, 과학기술의 협력,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협약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들(재정적 문제, 협약의 이행에 총괄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총회, 행정기관으로서 사무국 및 과학적·기술적 자문을 위한 보조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협약은 그 내용규정에 있어서 추상성 또는 프로그램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합의로서 의정서의 채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쟁해결, 의사결정, 서명, 가입, 발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틀은 제15조, 제8조(j),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제시되고 있다. 협약 제15조는 체약국의 영토 내에 있는 자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타 체약국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보유한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에 대한 기존의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¹²⁾을 수정하여

12) 인류의 공동유산개념은 UN주재 몰타(Malta)대사인 Arvid Pardo가 1967년 8월 17일 제22차 UN총회의 의제에 대한 보충자료를 포함한 구상서(note verbale)를 제출함으로써 제기되었다(UN Doc. A/6695, 1967). UN총회는 1970년 12월 17일 "심해저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Governing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the Subsoil thereof,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을 채택하면서 "인류의 공동유산"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 Kemal Baslar, *The Concept of the*

영토국의 주권적 권한을 인정하는 대신에 영토국이 이러한 자원을 배타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기술력을 가진 국가의 기술발전을 방해하거나 억제하지 않도록 다른 국가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협약 제8조 (j)는 국내입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¹³⁾의 전통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존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및 관행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 하에 이들의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16조는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으로, 체약국은 생명공학을 포함한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전이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요소를 인정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되거나, 환경적으로 건전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다른 체약국의 접근 및 이전을 제공 및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19조는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생명공학에 기인한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한 이전, 취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통지동의를 포함한 의정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에 기초하여 2000년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¹⁴⁾가 채택되었다.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pp. v-x xviii; 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para. 3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류공동유산원칙이론을 폐지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존이 인류의 공동관심사(common concern of humankind)임을 명시하고 있다. Francoise Burhenne-Guilmin and Susan Casey-Lefkowitz,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 Hard Won Global Achievement”, Gunther Handl, eds.,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3(1993), pp.47-48, notes14-15.

13) “토착민(indigenous people)” 또는 원주민이라고 번역되는 용어의 정의는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협약에서 말하는 토착민은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주민들을 말하는데 반하여, 미국의 인디언이나 남미의 인디언과 같이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구인의 입장에서는 원주민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근, “생물다양성의 국제적 보호와 지적재산권”, 국제법평론, 제15호(2001), 국제법평론회, 52면 주36 참고.

14) 동 의정서는 “사전주의적 접근방식에 따라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고려하고 특히 국가간 이동에 초점을 두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대생명공학기술로부터 나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이용에 있어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데 기여

2. 접근 및 이익공유 협상

1) 협상의 개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대한 작업은 1998년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스라바(Bratislava)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개시되었고, 그 때 당사자들은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룬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on the Work)¹⁵⁾을 설치하였다. 동 전문가패널은 1999년 10월 코스타리카의 산호세(San Jose)와 2001년 3월 캐나다의 몬트리올(Montreal)에서 개최되었고, 사전통지동의(Prior Informed Consent: PIC), 상호합의된 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관련 이해당사자를 위한 접근법 및 생물다양성협약 체계 내에서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규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포함한 일련의 권고안을 개발하였다.

2000년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에서 개최된 제5차 당사국총회는 사전통지동의(PIC)와 상호합의된 조건(MAT), 이해당사자의 참여, 이익공유체제와 전통지식의 보전에 대한 지침과 기타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작업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Sharing)¹⁶⁾과 협약 제8조(j)와 관련 조항에 관한 작업반(Ad Hoc Open-ended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Article 8(j) and Relate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함'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29일 채택되었고 2003년 9월 11일 발효하였다. 동 의정서는 전문, 본문 40개 조문 및 3개의 부속서를 구성되어 있고, 2011년 4월 20일 현재 동 의정서에는 16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http://www.cbd.int/biosafety/signinglist.shtml>).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3일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2008년 1월 1일 발효하였다(조약 제1877호).

15) 전문가패널은 (1) 입법, 정책 및 행정조치를 포함하는 관련 자료의 수집,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최선의 관행과 사례연구 및 (3) 원칙, 지침, 행위규칙 등을 포함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상호 합의된 조건을 위한 선택방안의 모색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16) 동 작업반은 2001년 10월 22일-26일까지 독일(Germany)의 본(Bonn)에서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아홉 차례의 회의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회의는 2010년 3월 22일-28일까지 콜롬비아(Colombia)의 칼리(Cali)에서 그리고 2010년 7월 10일-16일까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cbd.int/abs/>) 참조.

Diversity)을 설립하였다.

2) 본 지침(Bonn Guidelines)의 채택

2001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독일의 본(Bonn)에서 개최된 제1차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본지침 초안(draft Bonn Guidelines)을 개발하였다. 2002년 4월 7일부터 19일까지 네덜란드의 헤이그(The Hague)에서 개최된 제6차 당사국총회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본지침을 채택하였고, 접근 및 이익공유(ABS) 협정의 이행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에 대한 동 접근 및 이익공유(ABS) 협정의 관계를 또한 고려하였다.

유전자원에 관하여 최초로 채택된 범세계적 모델규범인 본지침(Bonn Guidelines)¹⁷⁾은 비록 구속력 없는 문서이기는 하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좀 더 공정하고 연대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규범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본지침의 목적은 (1)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익의 형평한 배분을 보장하는 투명한 체제를 당사국과 이해당사자(stakeholder)에 제공, (3)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체제 마련에 대한 지침제공, (4) 접근 및 이익공유협정에서 이해당사자의 관행과 접근방법의 통고, (5) 접근 및 이익공유협정의 효과적 협상을 위한 능력배양의 제공, (6) 생물다양성협약의 관련조항이행에 관한 인식제고, (7) 유전자원제공국, 이해당사자 및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술이전의 증진, (8) 개도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재정지원 증진, (9) 정보제공체제의 강화, (10)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에 따라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 기술혁신 및 관행의 보호를 인정하는 접근 및 이익공유체제의 개발, (11) 식량안보, 건강 및 문화적 통합성의 실현을 지원하고 빈곤완화에의 공헌, (12) 분류학적 연구증진

17) 본지침의 공식명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 공유에 관한 Bonn지침초안(Draft 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이다.

과 유전자원제공자의 용이한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이다.

3) 국제체제의 양식 고려

2002년 9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는 요하네스 이행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체제 내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제체제의 협상을 요구하였다.

2003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캐나다의 몬트리올(Montreal)에서 개최된 제2차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는 국제 접근 및 이익공유(ABS)체제의 절차, 성격, 범위, 요소 및 양식을 논의하였고, 사전통지동의(PIC), 상호합의된 조건(MAT)과 능력배양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또한 고려하였다.

2004년 2월 9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총회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위한 능력배양에 대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국제 접근 및 이익공유(ABS)체제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협상하는 것을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에 위임하였고, 협상을 위한 참조조건을 설정하였다.

2005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태국의 방콕(Bangkok)에서 개최된 제3차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국제체제의 고안을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의 문서를 생산하였다. 동 회의는 또한 원산지/출처/법적 기원의 국제적 증명과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본지침의 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법들, 사전통지동의(PIC)와 상호합의된 조건(MAT)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과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위한 표시의 옵션들을 다루었다.

4) 2010의 목표 설정

2006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스페인의 그라나다(Granada)에서 개최

된 제4차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는 국제 접근 및 이익공유(ABS)체제의 설립을 계속 논의하였고, 장래의 협상을 위한 기초로 기능하기 위한 초안문을 생산하였다. 작업반은 또한 원산지/출처/법적 기원의 국제적 증명과 사전통지동의(PIC)와 상호합의된 조건(MAT)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고려하였다.

2006년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브라질의 꾸리찌바(Curitiba)에서 개최된 제8차 당사국총회는 2010년 개최가 예정된 제10차 당사국총회 이전에 최대한 가능한 국제 접근 및 이익공유(ABS)체제에 관한 작업의 완성을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에 지시하였다. 당사국총회는 또한 제8조(j)에 대한 작업반에게 전통지식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의 위임사항에 기여하도록 요구하였다.

2007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의 몬트리올(Montreal)에서 개최된 제5차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국제체제의 실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대표들은 또한 콜롬비아의 페르난도 카사스(Fernando Casas)와 캐나다의 티모시 호지스(Timothy Hodges) 공동의장에 의해 상정된 2개의 비공식문서를 논의하였고, 제안서에 대한 그들의 노트는 동 회의에서 이루어졌고, 진전에 대한 그들의 반영이 이루어졌다.

5) 협상 로드맵작성과 전문가그룹의 작업

2008년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된 제6차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행,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및 능력배양을 포함한 국제체제의 주요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2008년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독일의 본(Bonn)에서 개최된 제9차 당사국총회는 협상의 완성을 위한 2010년 마감 이전에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이 3번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하는 국제체제의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채택하였다. 당사국총회는 또한 3개의 전문가그룹을 설립하였고,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에 제10차 당사국총회에 의한 고려와 채택을 위하여 국제체

제를 완결하고 단일문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2009년 4월 2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의 파리(Paris)에서 개최된 제7차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는 목적, 적용범위, 이행,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 공유와 접근에 대한 문서의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 절차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협상문서의 구조에 관련된 것이었고, 동 작업반은 이행, 이익공유 및 접근에 대한 통합된 제출서들을 진전시켰다.

2009년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의 몬트리올(Montreal)에서 개최된 제8차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는 국제체제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법적인 문서를 다루었고, 그것의 법적 성격을 논의하였다. 동 작업반회의는 단일의 통합된 국제체제초안으로 구성된 몬트리올 부속서(Montreal Annex)를 채택하였다.

6) 제9차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 회의

2010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콜롬비아의 칼리에서 개최된 제9차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의 첫 회의(First Part)는 동 회의 이전에 개최된 공동 의장의 비공식 지역간자문회의 동안의 작성요구에 기초하여 개발되고, 공동의 장에 의해 문서로 상정된 의정서초안에 기초하여 협상을 수행하였다. 파생물로부터의 이익공유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이행의 증명서를 포함하여 수많은 이슈에 대한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간그룹을 설립하였으나, 절차적인 논쟁 때문에, 지역간그룹은 문서에 기초한 협상을 수행하지 못했다.¹⁸⁾

2010년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9차 재개(Resumed)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의 의정서초안의 형식에서 실제적 결과의 승인을 포함하여 그들의 임무에 관한 수많은 중요한 단계를 이루어냈다. 회의에서 대표들은 기타 문서들과 국내 접근 및 이

18) 결국 제9차 첫 회의(First)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는 회의를 정지하고 7월에 다시 회의(Resumed)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된 의정서초안은 "문서에 대한 발전된 개정과 추가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회의에서 표현된 당사국들의 견해를 반영한 제9차 접근 및 이익공유(ABS)보고서와 함께 읽혀져야 한다는 이해와 함께, 합의되지 않았다."는 표현에 합의하였다. 회의 후에, 동 의정서초안은 협약 제28조(의정서의 채택)에 일치하여 당사국들에게 회람되었다.

익공유(ABS) 요구조건의 이행간의 관계를 포함한 어려운 이슈와 같이 논쟁이 적은 조항의 문구에 대한 합의도달에서 진전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또한 병원체의 적용범위와 이슈, 파생물과 유전자원의 이용개념을 포함한 더 많은 타협을 요구하는 핵심이슈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접근 및 이익공유(ABS)의정서초안은 많은 괄호가 남게 되었다.

7) 나고야의정서의 채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의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목적으로 나고야의정서¹⁹⁾를 채택하였다.

Ⅲ.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1. 나고야의정서의 구성

나고야의정서는 전문 27개항, 본문 36개 조문 및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조항들은 성격에 따라 크게 7개의 범주로 즉, ① 전문, ② 서문, ③ 일반규정, ④ 국내이행규정, ⑤ 재정규정, ⑥ 제도규정, ⑦ 부속서로 구분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아주 적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항들이 의무사항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²⁰⁾ 다음에 규정된 조항들의 구성

19) 나고야의정서의 공식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20) 나고야의정서 전문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고(para.2),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을 재확인하고(para.3),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의 공공인식과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유인책이고(para.6), 접근과 이익공유간의 연계성을 인정하고(para.8),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적 확실성의 중요성을 승인하고(para.9), 상호합의된 조건협상에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중요성을 승인하고(para.9), 생물다양성의

은 다음과 같다.

서문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3조 bis(국제협정 및 국제문서와의 관계)²¹⁾이다.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제4조(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 제5조(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제5조 bis(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제6조(특별한 고려), 제7조(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 제7조 bis(지구적인 다자적 이익공유제도),²²⁾ 제8조(국제적 협력), 제9조(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이다.

국내이행규정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제10조(국가연락처와 국가책임기관), 제11조(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제공기관과 정보공유), 제12조(국내법의 준수 또는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법적 요건), 제12조 bis(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국내법의 준수 또는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법적 요건),²³⁾ 제13조(유전자원의 이용 감시), 제14조(상호합의된 조건의 이행),²⁴⁾ 제15조(모델계약조항), 제16조(행위규범, 지침과 최고의 관행 및 기준), 제17조(인식제도), 제18조(능력), 제18조 bis(기술이전, 공동노력과 협력), 제18조 ter(비당사국)이다.

재정규정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19조(재정제도와 자원)이다.

제도규정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제20조(본 의정서의 당사국회의로서 기능하는 당사국총회), 제21조(보조기구), 제22조(사무국), 제23조(감시와 보고), 제24조(본 의정서의 이행증진을 위한 절차와 제도), 제25조(평가와 검토), 제26조(서명), 제27조(발효), 제28조(유보), 제29조(탈퇴), 제30조(정본)이다.

부속서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이다.²⁵⁾

보존과 접근 및 이익공유에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 특히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승인하고(para.11), 식량안보, 공중보건,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유전자원의 중요성, 빈곤의 완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승인하고(para.13),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근본적인 역할을 승인하고(para.15, 18),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승인하고(para.21), 토착민의 권리에 대한 유엔선언(UNDRIPs)에 주목하는 것(para.25) 등을 언급하고 있다.

21) 제3조 bis는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작업반(the ABS Working Group)회의에서 추가되었다.

22) 제7조 bis도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작업반(the ABS Working Group)회의에서 추가되었다.

23) 제12조 bis도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작업반(the ABS Working Group)회의에서 추가되었다.

24)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작업반(the ABS Working Group)회의에서 제14조 bis(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 옴부즈만)이 유전자원의 이용감시와 관련하여 논의되었으나 당사국총회에서 삭제되었다.

2.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적용범위

나고야의정서는 그 목적에 대하여 첫째,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둘째, 적절한 기금에 의한 자원과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관련 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 및 셋째, 이익공유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²⁶⁾ 이러한 목적규정은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에서 논의된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나고야의정서의 기본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규정에 합치한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²⁷⁾

나고야의정서는 용어의 정의에서 “당사국총회”, “협약”, “유전자원의 이용”, “생명공학기술” 및 “파생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²⁸⁾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내용은 “파생물(derivative)”로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의

25) 먼저, 금전적 이익으로는 (a) 접근료/수집된 또는 기타 취득된 표본 당 요금, (b) 선행 지급, (c) 기준 지급, (d) 사용료의 지급, (e) 상업화의 경우에서의 실시료, (f)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선택지금에 지급될 특별요금, (g) 상호합의되는 경우 급료와 특허조건, (h) 연구기금, (i) 공동벤처, (j)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금전적 이익으로는 (a) 연구개발결과의 공유, (b) 가능한 한 유전자원을 제공한 당사국에서 과학적 연구개발프로그램, 특히 생명공학기술 연구활동에서의 공동노력, 협력 및 기여, (c) 생산품 개발에서의 참여, (d) 교육과 훈련에서의 공동노력, 협력 및 기여, (e) 현지 외 유전자원시설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입장허가, (f) 특히, 생명공학기술을 포함한 유전자원의 이용에 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합의된 양허적이고 특허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 하에서 유전자원 제공자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이전, (g) 기술이전을 위한 능력의 강화, (h) 기관의 능력배양, (i) 접근규제의 관리와 집행을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및 물질 자원, (j) 유전자원 제공국의 완전한 참여와 가능한 한 그러한 국가에서 유전자원에 관련된 훈련, (k) 생물학적 목록과 분류학 연구를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과학적 정보에 대한 접근, (l)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m) 유전자원을 제공한 당사국에서 유전자원의 국내적 이용을 고려한 건강과 식량안보와 같은 우선적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n) 접근 및 이익공유 협정과 후속의 공동노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간간 및 전문적 관계, (o) 식량과 생계안전 이익, (p) 사회적 승인, (q)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동 소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26) 제1조.

27)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에서 논의된 나고야의정서의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UNEP/CBD/WG-ABS/9/L.2/Rev.1) 참조. 생물다양성협약 홈페이지(<http://www.cbd.int>). 2011년 6월 8일 검색.

28) 제2조.

초안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나고야의정서는 파생물에 대한 정의를 “유전적인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유전적 발현, 생물학적 또는 유전자원의 신진대사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화학적 합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물의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향후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고야의정서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첫째, 생물다양성협약의 범위 내에서의 유전자원과 그들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둘째,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과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범위에 대한 나고야의정서의 규정은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의 초안보다 상당히 구체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⁹⁾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일본정부와 일부 국가들이 당사국총회기간 내에 의정서를 채택하려고 했던 의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관련된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해 심각한 손해 또는 위협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국제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이들과 상하관계를 창설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³⁰⁾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은 나고야의정서가 기존의 다른 협약과 상충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적재산권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 조약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지적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

29) 제3조, 접근 및 이익공유(ABS)작업반회의의 의정서초안의 협상에서는 의정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a) 인간의 유전자원, (b) 국가 관할권을 넘는 유전자원, (c)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TPGR)의 운영기구에 의한 현재 또는 개정에 의한 ITPGR의 다자체제 하에서 ITPGR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ITPGR의 부속서 1에 포함된 유전자원, (d) 상품으로서만 유일하게 이용되는 경우, (e) 이 의정서의 발효 전에 획득한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 (f) 인간의 병원체, (g) 남위 60도 이남 지역인 남극에 위치한 유전자원)와 의정서가 적용되는 경우(a) 협약의 발효 전에 획득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계속된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b) 협약의 발효 전에 획득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새로운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c) 남위 60도 이남에 위치한 남극지역으로부터의 유전자원, (d) 국가관할권을 넘는 해양지역으로부터의 유전자원)를 나누어 고려하였다.

30) 제3조 bis 제1항.

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동 정부간위원회의 결과물은 향후 나고야의정서와 병존할 수 있도록 마련될 것으로 본다.³¹⁾

2)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는 후속의 응용과 상업화와 같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국 또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일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인 제공당사국과 공정하고 형평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³²⁾ 또한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합의된 기초에서 관련 공동체와 공정하고 형평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법률적, 행정적 또는 정책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³³⁾ 또한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 합의된 조건에 일치하여 그러한 지식을 보유한 관련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와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률적, 행정적 및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³⁴⁾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규정은 기술적 및 입법적인 면에서 향후에 해결하여야 할 매우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나고야의정서체제 내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역시 국가들 간에 존재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와의 이익공유도 동일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31) 동 정부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문제, ② 전통지식의 보호(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문제, ③ 민간전승물의 보호(protection of expression of folklore) 문제 등이다. 동 정부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홈페이지(www.wipo.org) 참조. 2011년 6월 8일 검색.

32) 제4조 제1항.

33) 제4조 제1항 bis.

34) 제4조 제4항.

3)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나고야의정서는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의 행사에서 그리고 그의 국내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 또는 법적 요건에 따라 자원의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동 당사국에 의해 달리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국 또는 협약에 일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하고 그러한 자원을 제공한 당사국의 사전통지동의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³⁵⁾ 또한, 국내법에 일치하여,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획득을 위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사전통지동의 또는 승인과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³⁶⁾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동의를 요구하는 각 당사국은 적절한 필요한 법률적, 행정적 또는 정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³⁷⁾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나고야의정서는 국내법에 일치하여, 각 당사국은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에 의해 보유된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이 이들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사전통지동의 또는 수락과 참여 그리고 설립된 상호합의된 조건과 함께 접근될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³⁸⁾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국가들은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사전통지동의와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향후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하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의 국내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제의 정비

35) 제5조 제1항.

36) 제5조 제1항 bis.

37) 그러한 조치로는 (a) 그들의 국내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 또는 법적 요건의 법적 확실성, 명확성과 투명성의 제공, (a) bis.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관한 공정하고 자의적이지 않은 규칙과 절차의 제공, (b) 사전통지동의의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의 제공, (c) 비용-효과적인 방식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가책임 기관에 의한 명확하고 투명한 서면결정의 제공, (d) 접근의 허가 시 발행서 또는 사전통지동의에 대한 결정과 상호합의된 조건의 설립의 증거로 대등한 것의 제공과 접근 및 이익공유정보제공기관에 대한 통고, (e)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사전통지동의의 획득 또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수락과 참여를 위한 기준과 절차의 마련, (f) 상호합의된 조건의 요구조건과 설립을 위한 명확한 규칙과 절차의 확립. 제5조 제2항.

38) 제5조 bis.

에 대한 방향은 유전자원에 관련된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과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제안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생물 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와 전통지식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규정이라 판단된다.³⁹⁾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내용들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특별한 고려, 기여, 지구적 이익공유제도 및 국제협력

특별한 고려에 대하여 나고야의정서는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 또는 법적 요건의 개발과 이행에서 각 당사국은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⁴⁰⁾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에 관하여 나고야의정서는 당사국들은 이용자와 제공자들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그의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방향으로 하도록 장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⁴¹⁾ 그리고 지구적인 다자적 이익공유제도에 관하여 나고야

39)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755)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나타난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외국인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전통지식 보호,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안 제19조 제1항은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생물자원의 연구·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생물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는 전통지식의 보호 등에 대하여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의 발굴·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renew10/info/law/lastacceptbill_list.jsp) 입법정보 참조, 2011년 6월 8일 검색.

40) 그러한 사항으로는 (a) 그러한 연구의 목적의 변경을 규율할 필요를 고려하여 비상업적 연구목적에 대한 접근에 대한 간단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히, 개도국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함, (b)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인간, 동물 또는 식물건강을 위협하거나 또는 침해하는 현재의 또는 즉각적인 긴급상황의 경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당사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특히 개도국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충분한 대우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그러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신속한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대한 필요를 고려할 수 있다. (c) 식량농업유전자원의 중요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그들의 특별한 역할을 고려함 등이다. 제6조.

41) 제7조.

의정서는 당사국들은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또는 사전통지동의의 부여 또는 획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규율하기 위한 지구적인 다자적 이익공유제도의 필요와 방식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제도를 통하여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자에 의해 공유된 이익은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⁴²⁾

국제협력에 관하여 나고야의정서는 첫째, 동일한 유전자원이 두개 당사국 이상의 영토 내에서 현지 내 자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들 당사국들은 본 의정서의 이행을 목적으로 적절한 관련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함께 적절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둘째, 유전자원에 관련된 동일한 전통지식이 여러 당사국들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에 의해 공유되는 경우, 그들 당사국들은 본 의정서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함께 적절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⁴³⁾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국가들은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이 과정에서 특히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이들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유전자원이용자에 의하여 실현가능한 이익공유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특히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통한 방법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5)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관하여 나고야 의정서는 첫째, 본 의정서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당사국들은 국내법에 일치하여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을 존중하기 위하여 적절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법률, 공동체규약과 절차를 고려하여야 하고, 둘째, 당사국들은 관련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효과

42) 제7조 bis.

43)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적인 참여와 함께 그러한 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하여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제공기관을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잠재적인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통지하기 위한 제도를 확립하여야 하고, 셋째, 당사국들은 이들 공동체 내의 여성을 포함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에 의해 개발된 것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⁴⁴⁾ 넷째, 본 의정서의 이행에서 당사국들은 협약의 목적에 따라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 내에서 이들 상호간에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관습적인 이용과 교환을 가능한 한 제한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⁴⁵⁾

6) 관련 국가기관 및 정보제공기관과의 정보공유

관련 국가기관으로 국가연락처(National Focal Points)와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에 관하여 나고야의정서는 첫째,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연락처를 지정하여야 하고, 국가연락처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⁴⁶⁾ 사무국에 대한 연락책임을 부담하고, 둘째,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국가책임기관은 적절한 국내의 법률적, 행정적 및 정책 조치에 따라 접근부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또는 접근조건에 적합한 적절한 서면증거의 발행과 사전통지동의의 취득과 상호합의된 조건의 시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와 요건에 자문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셋째, 당사국은 국가연락처와 국가책임기관의 양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단일의 실체를 지정할 수 있고, 넷째,

44) 그러한 조치에는 (a)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공동체의 규약, (b)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상호합의된 조건을 위한 최소 요구조건, (c)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한 모델계약조항 등이다. 제9조 제3항.

45) 제9조.

46) 그러한 정보에는 (a)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신청과 이익공유를 포함한 사전통지동의의 획득과 상호합의된 조건의 설립을 위한 절차에 대한 정보, (b)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의 신청과 적절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사전통지동의 또는 수락 및 참여의 획득과 이익공유를 포함한 상호합의된 조건의 설립의 절차에 대한 정보, (c) 국가책임기관, 관련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보이고 등이다. 제10조 제1항.

각 당사국은 본 의정서의 발효일 전에 국가연락처와 국가책임기관의 접촉정보를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사무국은 제4항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제공기관을 통하여 이용가능한 정보를 접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⁴⁷⁾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들은 일부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정부부처에서 유전자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가입시 유전자원의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연락처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허가기관으로서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환경부를 국가연락처로 지정하고, 기타 유전자원을 담당하는 여러 부처를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는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관리체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제공기관과의 정보공유에 관하여 나고야의정서는 첫째,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제공기관(ABSCH)은 협약 제18조 제3항하의 정보제공제도(CHM)의 일부로서 설립되었고, ABSCH는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련된 정보의 공유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을 하는데, 특히, 본 의정서의 이행에 관련하여 각 당사국에 의하여 이용가능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침해 없이, 각 당사국은 본 의정서의 당사국회의로서 기능하는 당사국총회에 의해 취해진 결정에 따라 요구된 정보와 같이, 본 의정서에 의해 요구된 어떠한 정보를 ABSCH에 이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⁴⁸⁾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들이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하여 정보제공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고야의정서는 정보를 공유함에 비밀정보를 보호할 것을

47) 제10조.

48) 동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및 정책 조치, (b) 국가연락처와 국가책임기관에 대한 정보, (c) 사전통지동의의 부여와 상호합의된 조건의 설립에 대한 결정의 증거로서 접근 시 발행된 허가서 또는 그와 대등한 것 등이다. 제11조 제2항. 이용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a)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관련 책임기관과 결정된 정보, (b) 모델계약조항, (c) 유전자원을 감시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과 도구, 및 (d) 행위규범과 최고의 관행 등이다. 제11조 제3항.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대표적인 비밀정보는 영업비밀(trade secret)이 될 것인데, 향후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유전자원의 이용감시와 상호합의된 조건

유전자원의 이용감시에 대하여 나고야의정서는 첫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투명성을 감시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⁴⁹⁾ 둘째, 제5조 제2항(d)에 일치하여 발행되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제공기관에 이용가능한 허가서 또는 그와 대등한 것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이행증명서를 구성하여야 하고, 셋째, 하나의 국제적으로 승인된 이행증명서는 거기에 포함된 유전자원이 사전통지동의를 제공한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또는 법적 요건에서 규정한 것처럼 사전통지동의와 설립된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라 접근되었다는 증거로서 기능하여야 하고, 넷째, 국제적으로 승인된 이행증명서는 그것이 비밀정보가 아닌 경우 최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⁵⁰⁾

이 조항은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대한 사후감시적 성격을 갖는 조항으로 그 방안의 한 가지로 국제적으로 승인된 이행증명서를 언급하고 있다. 현재 유전자

49) 그러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다음과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체크포인트의 지정, (i) 지정된 체크포인트는 사전통지동의,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합의된 조건의 설립 및 적절한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적절히 수집 또는 접수한다. (ii) 각 당사국은 지정된 체크포인트의 특별한 성격에 적절히 의존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자들에게 앞의 지정된 체크포인트 하에서 특정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비이행의 상황을 규율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ii) 그들이 이용가능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증명서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침해함이 없이 적절한 관련 국내 당국, 사전통지동의를 제공한 당사국 및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될 것이다. (iv) 체크포인트는 본 속항 (a)의 이행에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유전자원의 이용 또는 관련 정보의 수집, 특히 연구, 개발, 혁신, 상업화 이전 또는 상업화의 단계에 대한 정보에 관련되어야 한다. (b) 보고요건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조건의 이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상호합의된 조건의 조항을 포함하기 위한 유전자원의 이용자와 제공자의 장려, (c) 비용효과적인 통신도구와 체계의 이용 장려 등이다. 제13조 제1항.

50) 그러한 정보에는 (a) 발행당국, (b) 발행일, (c) 제공자, (d) 증명서의 독특한 확인서, (e) 사전통지동의를 부여한 자연인 또는 실체, (f) 주요 문제 또는 증명서에 의해 포함되는 유전자원, (g) 설립된 상호합의된 조건의 확증, (g) bis. 획득된 사전통지동의를의 확증, (h) 상업적 및 비상업적 이용 등이다. 제13조 제4항.

원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이용되고 있는 물질이전협정(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⁵¹⁾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는 분양계약서와 동일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분양계약서(분양신청과 분양승인)를 규정하고 있다.⁵²⁾ 향후 나고야의정서의 이용감시에 대한 규정은 동법의 분양계약서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상호합의된 조건에 대하여 나고야의정서는 첫째, 제5조 제2항(f)(i)와 제5조 bis의 이행에서,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다음과 같이 적절한 분쟁해결을 포함하는 상호합의된 조건의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에는 (a) 분쟁해결절차에서 그들이 따르기로 한 관할권, (b) 적용 가능한 법률, 및/또는 (c) 중개 또는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선택이 포함되고, 둘째, 각 당사국은 상호합의된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사례에서 적용가능한 관할권의 요구에 일치하는 그들의 법률체제 하에서 이용가능한 소송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셋째, 각 당사국은 다음에 관하여 적절한 효과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a) 사법심사에 대한 접근, (b) 외국의 판결과 중재판정의 상호 승인과 집행에 관한 제도의 이용이 포함된다.⁵³⁾

생물다양성협약과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 등 유전자원을 규율하는 조약들은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분쟁해결조항도 관련 조약들과 같은

51) 대표적인 물질이전협정은 식량농업기구(FAO) 산하의 여러 국제농업연구센터(IARCs)에서 농업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이용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물질이전협정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였다. 식량농업기구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16일 표준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을 채택하였다. 동 물질이전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량농업기구 홈페이지(www.fao.org) 참조. 2011년 6월 8일 검색.

5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589호로 제정되었다. 동 법률 제8조 제1항, 동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서 농업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분양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률규정에 따라 분양승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3) 제14조.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상호합의된 조건의 목록을 설정할 때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유전자원의 잠재적 이용자인 관련 기업이나 개인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는 홍보와 교육을 위하여 지원시설(Help Desk) 등 관련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 인식제고, 능력배양 및 기술이전

인식제고에 관하여 나고야의정서는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 및 관련 접근 등 이익공유문제의 중요성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⁵⁴⁾ 나고야의정서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정부차원에서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능력배양과 관련하여 나고야의정서는 첫째, 당사국들은 개도국인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규모 도서개도국들과 경제체제전환국들이 본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구적, 지역적, 하부지역적 및 국내적 기관들과 조직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적 및 기관적 능력의 능력배양, 능력개발 및 강화에서 협력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들은 비정부기구와 사적 부문을 포함하여 관련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둘째, 협약의 관련 조항에 일치하여 재정자원에 대한 개도국인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규모 도서개도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필요는 본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능력배양과 개발을 완전하게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셋째, 본 의정서의 이행에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위

54) 그러한 조치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a) 그의 목적을 포함한 본 의정서의 촉진, (b)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회의의 조직, (c)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당사자를 위한 지원창구의 설립과 유지, (d) 국가정보제공기관을 통한 정보의 전파, (e)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서 자발적인 행위규범, 지침과 최고의 관행 및 기준의 증진, (f) 적절한 국내적, 지역적 및 국제적 경험의 교환 증진, (g) 그들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에 관한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자와 제공자의 교육과 훈련, (h) 본 의정서의 이행에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 (i)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공동체규약과 절차의 인식의 증진 등이다. 제17조.

한 기초로서, 개도국인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규모 도서개도국과 경제체제전환국들은 국내의 자기평가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국가적 필요와 우선순위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러한 당사국들은 여성의 능력필요와 우선순위를 강화하면서 그들에 의해 확인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당사자의 능력필요와 우선순위를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넷째, 본 의정서의 이행을 지원함에 있어서 능력배양과 개발은 특히 핵심영역을 규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⁵⁵⁾

기술이전에 관하여 나고야의정서는 첫째, 협약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일치하여, 당사국들은 본 의정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명공학적 연구활동을 포함한 기술 및 과학적 연구개발프로그램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하고, 둘째, 당사국들은 협약과 의정서의 목적의 달성을 위한 건전하고 중요한 기술적 및 과학적 기초의 개발과 강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빈개도국, 소규모도서개도국 및 경제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하고, 가능하고 적절한 그러한 공동노력활동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국 또는 협약에 일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인 유전자원을 제공한 당사국에서 또는 그들 국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⁵⁶⁾

많은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개도국인 경우가 많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선진국인 경우가 대부분이

55) 그러한 핵심영역에는 (a) 본 의정서의 이행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능력, (b) 상호합의된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능력, (c)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내의 법률적, 행정적 또는 정책 조치를 개발, 이행 및 집행하기 위한 능력, (d) 그들이 소유한 유전자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들의 내생적인 연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들의 능력 등이 포함된다. 제18조 제4항.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a) 법적 및 기관의 개발, (b) 상호합의된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훈련과 같은 협상에서의 대등성과 공정성 증진, (c) 이행의 감시와 집행, (d)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을 위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통신도구와 인터넷 기반 시스템의 채용, (e) 가치평가방법의 개발과 이용, (f) 생물탐사, 관련 연구 및 분류학적 연구, (g) 기술이전, 그러한 기술이전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반과 기술능력, (h)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의 기여의 강화, (i)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관련 이해당사자의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j)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그들 공동체 내의 여성의 능력의 강화에 대한 증진과 함께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등이다. 제18조 제5항.

56) 제18조 bis.

다. 이 점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이용국의 측면에 있기 때문에 향후 최빈 개도국, 소규모도서개도국 및 경제체제전환국을 포함하여 이들 자원보유국들과의 협력 및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도입을 위하여 앞으로 우리나라는 자원보유국의 능력개발 및 이들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전 등 관련 협력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9) 기타 조항

나고야의정서의 운영을 위하여 첫째, 재정조항으로서 재정제도와 재원,⁵⁷⁾ 둘째, 제도조항으로서 당사국총회,⁵⁸⁾ 보조기구 및 사무국에 관한 조항, 셋째, 본 의정서의 이행조항으로서 감시와 보고, 이행증진을 위한 절차와 제도, 평가와 검토에 관한 조항, 넷째, 잡칙조항으로서 서명, 발효, 유보, 탈퇴, 정본에 관한 조항이 있다.

IV. 향후 전망 및 제언

유전자원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보호는 인류의 생존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미래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⁵⁹⁾ 대부분의 유전자원이 개도국의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것

57) 제19조.

58) 당사국총회의 주요 권한은 (a) 본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문제에 대한 권고, (b) 본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보조기구의 설립, (c) 권위있는 국제적 기구와 정부간 및 비정부간기구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서비스와 협력의 적절한 탐색과 이용, (d) 본 의정서의 제23조에 일치하여 제출된 정보의 전달을 위한 형식과 간격의 설립 및 보조기구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와 같은 정보에 대한 고려, (e) 본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본 의정서와 부속서의 개정요구에 대한 고려와 채택, (f) 본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요구될 수 있는 기타 기능의 수행 등이다. 제20조 제4항.

59) 2010년 현재 전 세계 주요산업시장의 규모를 보면, 반도체 3,000억 달러, 석유화학 5,000억 달러, 자동차 1조 6,000억 달러, 생명산업 2조 5,000억 달러 및 IT 3조 5,000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4대 핵심 생명자원으로 꼽히는 미생물자원, 식물자원, 동물자원, 곤충자원 시장이 각각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데다 유전자원, 종자, 기능성 식품 등 그 범위도 무궁무진하다. 매일경제, 「車시장보다 큰 생명산업

을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이 상호협력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및 선진국과 선진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국제기구에 의하여 활발한 보호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의 경우는 국내입법을 통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보호체제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와 함께 국제기구 상호간의 보완적인 고려도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정부간위원회와 유엔 식량농업기구 및 유엔 환경계획에서의 논의는 대체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보유한 개도국의 이익보호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다.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논의는 주로 선진국의 주장에 의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0년은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2010 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 IYB)이고, 올해는 산림의 해(2011 International Year for Forests: IYF)이다.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2010년 10월 일본의 나고야에서 개최되었고, 동 회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인 노력에서 역사적인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은 생물다양성의 해를 맞이한 최대의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는 완전 무결한 조약이 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당사국총회 주최국인 일본정부의 의정서채택에 대한 과도한 열의와 집착은 나고야의정서에서 많은 모호성을 남겨두었다. 이들 모호성의 해석에 대한 문제와 ABS작업반의 초안에서 언급되었지만 당사국총회의 결정에서 삭제된 주요 내용에 대한 추가 작업이 향후 나고야의정서의 개정요구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나고야의정서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발효와 이행을 위하여 정부간위원회⁶⁰⁾를 설립하였다. 동 정부간위원회

잡아라: 미생물·동식물·유전자·종자... 세계시장 2조 5천억 달러, (<http://www.mk.co.kr/>), 2010년 7월 18일 인터넷 검색.

60) 동 정부간위원회의 공식명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

의 작업과 함께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국제규범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대응책 마련에는 나고야의정서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내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내법제의 정비에 대한 방향은 나고야의정서의 규정을 반영하여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과 또는 유전자원 관련 국내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새로운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동 법률안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입법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상호합의된 조건의 목록에 포함되어야 분쟁해결조항과 나고야의정서에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교육, 홍보 등이다. 그리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주로 이용자 측면에 있기 때문에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외국의 유전자원 관련 법령, 절차 및 이익공유 사례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을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 등과 같이 필요한 국내의 법률적, 행정적 및 정책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제안한다.

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위한 정부간위원회(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⁷⁾로 그 공식 작업계획은 문서 UNEP/CBD/COP/10/L.43/Rev.1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동 정부간위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첫 회의는 2011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두 번째 회의는 2012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첫 회의에서 고려할 의제는 (1) 그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한 접근 및 이익공유정보 제공기관(ABSCH)의 운영양식(제11조 제4항), (2) 본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당사국에 의해 확인된 필요를 고려하여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규모 도서개도국과 경제체제전환국에서 인적 자원 및 기관적 능력의 능력배양, 능력개발과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제18조), (3)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 및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문제의 중요성의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제17조), (4) 적절한 자문의 제공 또는 지원을 위한 절차와 제도를 포함하여 의정서의 이행을 촉진하고 비이행의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협력적 절차와 기관적 제도(제24조)이고, 둘째 회의에서 고려할 의제는 (5) 의정서의 발효 후 2년 동안의 프로그램 예산의 개발, (6) 재정제도를 위한 안내의 노력(제19조), (7)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유동자원에 관한 안내의 노력, (8) 의정서의 당사국회의로서 기능하는 당사국총회의 절차규칙의 고려(제20조 제5항), (9) 첫 당사국회의를 위한 임시의제의 초안노력(제20조 제6항), (10) 지구적인 다자이익공유제도의 필요와 모델, (11) 필요한 경우 정부간위원회의 첫 회의까지 의제의 계속된 고려 등이다.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박철호, 식물유전자원학개론, 도서출판 진솔, 2000.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통의약 관련 전통지식 현황조사 및 지재산 관련 연구, 특허청, 2002.

Lyle Glowka, *A Guid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orld Conservation Union, 1994. 국립환경연구원 역,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해설서, 국립환경연구원, 1995.

〈해외 단행본〉

Catherine Monagle, Aimee T. Gonzales, *Biodivers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view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light of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 Joint Discussion Paper, 2001.

Kemal Baslar,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국내 학술지〉

이재곤, “자생식물유전자원의 국내적 보호와 국제법”, 국제법학회논총, 46권 3호 (2001), 대한국제법학회.

이재곤, “생물다양성의 국제적 보호와 지적재산권”, 국제법평론, 15호(2001), 국제법 평론회.

〈해외 학술지〉

Carlos M. Correa,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AO Background Study Paper*, No.8(1999),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Danial M. Putterman, “Model Material Transfer Agreements for Equitable Biodiversity Protecting”, *Colorad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vol.7(1996).

Emily Marden, “The Neem Tree Patent: International Conflict over the

Commodification of Life”,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1999.

Francoise Burhenne-Guilmin and Susan Casey-Lefkowitz,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 Hard Won Global Achievement”, Gunther Handl, eds.,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3(1993).

Sean D. Murphy, “Biotechnology and International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42(2001).

〈인터넷자료〉

매일경제, 「한국은 생명자원 6대 보유국 ... 원천기술 확보가 관건: 토마토 종자 1g 가격은 금값의 3배 부가가치 높고, 미생물 520만종 중 배양 12만종 뿐 미개척지 많아」, (<http://www.mk.co.kr/>), 2010년 7월 18일 인터넷 검색.

매일경제, 「車시장보다 큰 생명산업 잡아라: 미생물·동식물·유전자·종자 ... 세계시장 2조 5천억 달러」, (<http://www.mk.co.kr/>), 2010년 7월 18일 인터넷 검색.

The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Analysis on Prospection of the Protocol

Yun-Seok Oh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ar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The objective of benefit sharing is a key element of measures necessary for realizations of the other objectives. The CBD acknowledge the sovereign rights of resources states to regul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their right to stipulate the sharing of benefits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The CBD provides that users of genetic resources are obliged to shar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with resources states. S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BD(COP/CBD) established the 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to develop guidelines and other approaches on: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benefit-sharing mechanisms; and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he Working Group made a Draft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COP/CBD 10 was held from 18-29 October 2010, in Nagoya, Japan. The COP/CBD 10 considered a series of strategic, substantive,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issues and adopted 47 decisions. Especially, the COP/CBD 10 adopted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the Nagoya Protocol). The Nagoya Protocol provides the substantive clauses: objectives, access requirements, benefit sharing,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traditional knowledge, compliance, monitoring and transboundary situation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study on the history of adoption of the Nagoya ABS protocol, main contents of the Nagoya Protocol and analysis on its prospection.

Keywords

biological diversity,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ior informed consent, mutually agreed terms.

